

[별지 제38호서식] <개정 2008.12.22>

거 래 내 역 서

판매업소명( )

거 래 연월일	식육·포장육의 종류	물량 (kg)	원산지 ( )	부위 명칭	등급	도축장명	개체식별번호(선하증권번호)	매입처 ( )

※ 적는 요령

- ①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는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 등으로 적고,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, 육우, 젓소 중 해당되는 사항을 ( )안에 함께 적는다.
- ② 원산지는 국내산 또는 수입으로, 수입의 경우 ( )안에 수출국을 함께 적는다. 다만, 외국에서 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도축된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적되 ( )안에 수출국을 함께 적는다.
- ③ 부위명칭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한정하여 안심, 등심, 목심 등으로 적고, 지육의 경우는 지육으로 적으며, 2가지 이상의 부위가 혼합된 포장육의 경우에는 그 부위를 모두 적거나 주된 부위 위주로 “○○혼합”으로 적을 수 있다.
- ④ 등급(「축산법」 제35조에 따라 판정받은 등급을 말한다)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시 대상 식육의 부위에 한정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육질등급(1+등급, 1등급, 2등급 등)을 적는다.
- ⑤ 개체식별번호는 「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체식별번호 또는 선하증권번호(수입된 쇠고기만 해당한다)를 적는다.
- ⑥ 매입처는 해당 판매업소에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한 업소의 명칭을 적고, ( )안에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적는다.
- ⑦ 식용하는 부산물의 경우에는 거래연월일, 식육의 종류·물량·원산지·매입처를 적는다.